#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[김지훈(민) 의원 대표발의]

의 안 번 호 418 발의연월일: 2024. 4. 4.

발 의 자 : 김지훈(민, 김지훈(국), 한근수,

전혜연, 정현미, 이수련,

원주영, 한송연

### 1. 제안 이유

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정보통신망 사용 과의존 범위를 보다 보편적인 매체인 스마트폰까지 확대하고,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각종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가. 제명 변경

: 「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」

- → 「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」 나. 각종 용어 재정비(안 제1조~제9조)
- 다.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・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(안 제6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- 6. 관련법령
- 가.「청소년 기본법」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###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"를 "남양주시 청소년 의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"를 "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"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"이란 인터넷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 으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.
- 3. "청소년 유해정보"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 폭력정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.
- 4. "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"란 인터넷·스마트폰 유해정보 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5. "인터넷·스마트폰 문해력"이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터넷·스

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.

제3조 중 "인터넷중독 예방을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인터넷중독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피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"을 "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중 "인터넷중독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"을 "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인터넷중독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인터넷중독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"로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"을 "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"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업)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예절 교육
- 2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문해력 교육
- 3.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
- 4.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

- 5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 · 치유 지원
- 6.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대응 상담전 문인력 양성지원
- 7.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·상담·서비 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
- 8.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제1항 중 "인터넷중독 예방"을 "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"으로, "인터넷중독 관련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관련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인터넷중독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" 로 한다.

제9조 중 "인터넷중독"을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"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남양주시 청소년의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인터넷 •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제1조(목적) -----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 -----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 및 과의존<u>을 방지하기</u> -----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"인터넷중독"이란 컴퓨터, 스 2. "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" 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 이란 인터넷・스마트폰의 지 <u>나친 이용</u>으로 청소년이 일상 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|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상태를 말한다. 없을 정도로 신체적·정신적·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. <신 설> 3. "청소년 유해정보"란 「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
<신 설>

<신 설>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 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청소 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.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) ①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)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 | 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.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|

등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되는 음란 · 폭력정보 등 청소 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.

- 4. "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 비스"란 인터넷 · 스마트폰 유 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 를 말한다.
- 5. "인터넷·스마트폰 문해력" 이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 터넷 · 스마트폰을 통해 습득 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.

--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기 -----

----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피 해 -----
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 아
- 2.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
- 3.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- 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예방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제6조(사업) 시장은 청소년의 올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 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• 스 마트폰 사용-----

2. ---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 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 하 피해 -----

- 3.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· 스 마트폰 사용-----
- 4.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4. ----- 인터넷・스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 해정보로 인한 피해 -----
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효율 제5조(실태조사) ① ---- 청소 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년 인터넷 • 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-
  - ② (현행과 같음)
  - 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  - 1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사 용예절 교육

- 제7조(전문가 등 자문) ① 시장은 제7조(전문가 등 자문) ① -----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 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<u>인터넷중독</u> |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.
  - ② (생략)

- 2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문 해력 교육
- 3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과 의존 치유캠프
- 4.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 비스 지원 및 홍보
- 5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과 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 원
- 6. 청소년 인터넷 · 스마트폰 과 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
- 7.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· 스 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・상담 ·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
- 8.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・스 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-----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 폰 사용-----
  - ----- 인터넷·스
- 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관련 --.
  - 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청소 년 <u>인터넷중독</u> 예방 교육 등 관 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청 소년 <u>인터넷중독</u>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	_
<u>인터넷·스마트폰</u> 과의존	- -
<u>및 유해정보 피해</u>	_
	-
제9조(협력체계 구축)	_
<u>인터넷·스마트폰</u> 과의존	- -
<u> 및 유해정보 피해</u>	-
	_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자치법규안명
  -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
- 재정 수반 요인
  - 제6조(예방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- 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

### 관계법령

### ☑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. "청소년육성"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,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을 돕는 것을 말한다.
- 3. "청소년활동"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청소년복지"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・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・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- 5. "청소년보호" 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·물건·장소·행위 등 각 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  - 6. "청소년시설"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  - 7. "청소년지도자"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   - 가.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    - 나.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- 다.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8.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교육 및 홍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-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### ☑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 정보"라 한다)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

- 1.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
- 2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
- 3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- 4.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 회"라 한다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·이용자단체,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